

September 13, 2022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

I. 인도네시아 국회의 한-인니 CEPA 비준 및 진행 상황

2022년 8월 30일, 인도네시아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인니 CEPA”)을 비준하였습니다. 한-인니 CEPA는 2020년 12월 체결되었고, 2021년 6월 한국 국회 비준을 완료하여, 인도네시아 국회의 비준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한-인니 CEPA는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9월 28일)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한-인니 CEPA 주요 내용과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영향을 안내합니다.

II. 한-인니CEPA 비준과 발효 절차

인도네시아 입법에 관한 2011년 제12호 법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국제적 조약 또는 협정이 인도네시아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국회의 비준 및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동법 제1조 제3호). 조약은 인도네시아 국회가 비준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대통령에게 제출되며, 인도네시아 국회가 비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대통령이 승인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동법 제73조 제1항). 대통령은 조약의 승인 거부권을 보유하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30일이 지나는 경우에도 조약이 자동 승인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동법 제73조 제2항). 따라서, 한-인니 CEPA는 인도네시아 국회 승인일로부터 30일이 되는 9월 29일 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인니 CEPA에 대한 후속 입법이 논의 중이며, 그 일환으로 HS code 별 세율에 대한 재무부 시행규칙 도입도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양 은 용

변호사

T 65.6911.6784

E eric.yang@bkl.co.kr

안 철 호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T 02.3404.7586

E cheolhyo.ahn@bkl.co.kr

안 우 진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Massachusetts주)

T 84.28.3821.2303

E ujin.ahn@bkl.co.kr

장 순 필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T 62.811.871.0071

E soonpeel.chang@bkl.co.kr

반 정 현

변호사

T 02.3404.0866

E junghyun.bhan@bkl.co.kr

1 하원을 의미하나 이하에서는 편의를 위해 국회로 표시함.

III. 한-인니CEPA의 주요 내용

1.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강화

한국 투자자들은 한-인니 CEPA에 따라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래 인도네시아 법상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는 내국민 대우 원칙(투자법 제4조 제2항 제a호), 외국인 상호간 동일대우 원칙(동법 제6조 제1항), 강제 국유화 금지 및 시장가치보상 원칙(동법 제7조), 재산이전 자유의 권리(동법 제8조 제1항), 외화송금/환수권리(동법 제8조 제3항) 등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인니 CEPA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가하여 한국인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o	주요내용	근거규정	상세
1	내국민대우	제7.4조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일한 상황에서 <u>내국민 투자 및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u> 를 제공하며, 본 목적 상 투자자의 범위에 투자를 하려는 자도 포함함.
2	최혜국대우	제7.5조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일한 상황에서 <u>제3국의 투자 및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u> 를 제공하며 다른 협정에서 이 협정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본 협정 당사국에게 자동적으로 그러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함. 단, ISD 등 국제분쟁해결 절차에 적용되지는 않음.
3	투자대우	제7.6조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제 관습법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함.
4	이행요건	제7.8조	외국인 투자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매각 등에 관하여, 다음의 7가지 특정이행 의무 부과를 금지함: 일정수준 국내재료의 사용, 국내상품 사용, 수출과 수입간 연계, 수출과 판매간 연계, 일정수준 수출,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단, 일정 수준의 수출 의무와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 공급 의무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시 의무 부과 가능.
5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7.9조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 임명 시 국적요건 부과 금지. 외국투자기업의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국적요건은 부과 가능. 단, 해당 요건이 외국인 투자자의 해당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됨.
6	비합치조치	제7.10조	유보목록에 기재된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
7	송금	제7.11조	<u>초기자본금, 이윤, 배당금, 이자, 자본이득, 로열티 등을 지체없이 송금</u>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다음의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파산, 지급불능, 채권자 보호, 증권 등의 거래, 형법 적용, 규제 당국의 법집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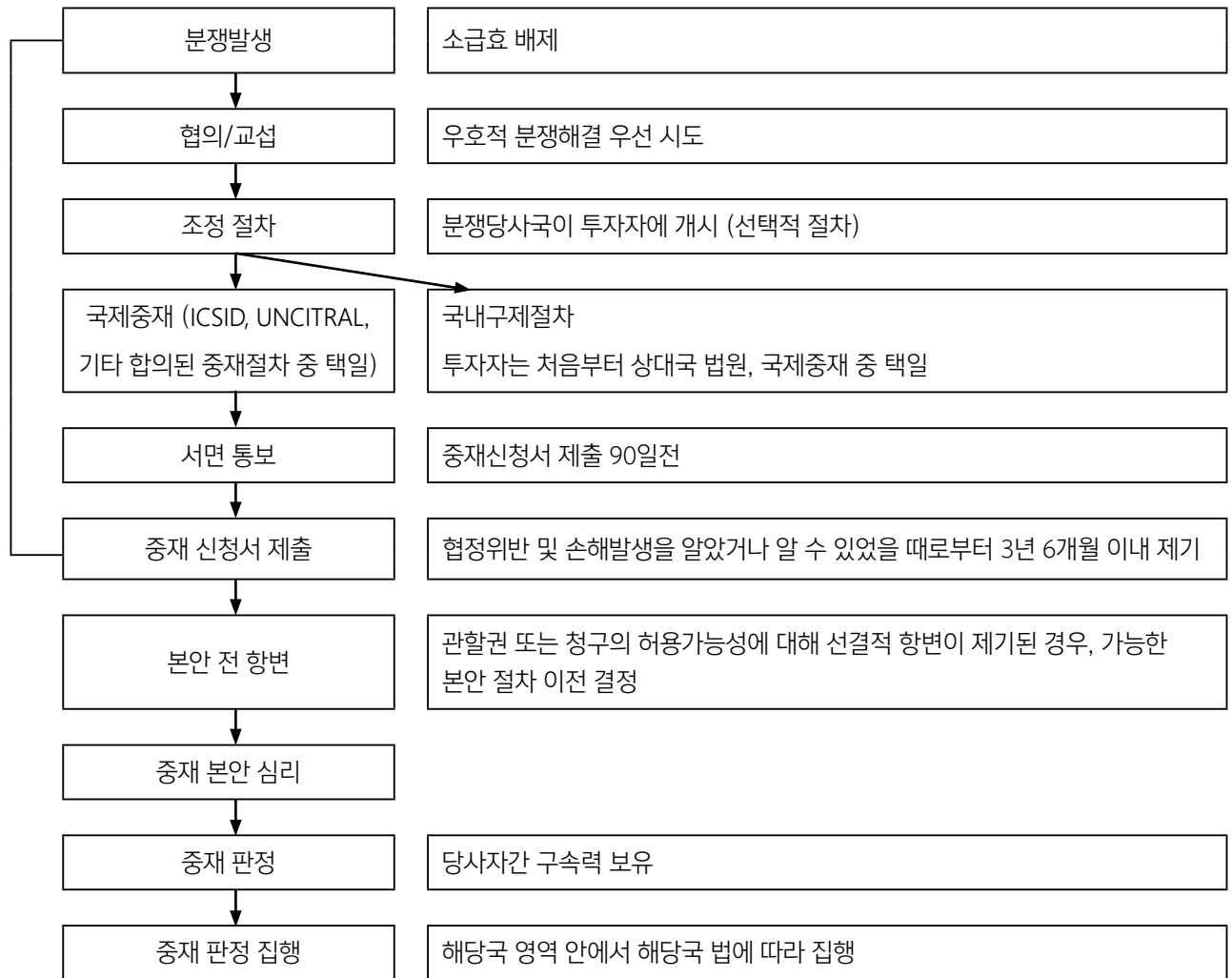
			서 금융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 퇴직금 등.
8	수용 및 보상	제7.12조, 부속서 7-나	정부는 공공목적을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신속 적절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u>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u> 에 한하여 수용 또는 국유화 가능. 간접수용(당사국의 행위가 명의의 이전 또는 명백한 물수가 아니더라도 직접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국가적 조치)도 수용으로 보되,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 안정화 등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비차별적인 정부의 규제행위는 가능.
9	대위변제	제7.13조	국가기관의 해외투자보험에 가입한 투자자가 상대국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동 국가기관이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명시.
10	혜택의 부인	제7.15조	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방 당사국의 <u>paper company</u> 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
11	환경 조치	제7.16조	자국 환경 조치를 완화하여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장려하거나 확장하기 위하여 환경조치를 면제하는 것을 금지.
12	외국환거래 제한	부속서 7-다	국제수지악화 및 외환위기 등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을 시, 외국환거래를 통제하는 단기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은 가능. 단, 원칙적으로 단기세이프가드 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상황이 개선될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함.

2.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도입

인도네시아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와 인도네시아 정부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동법 제7조 제3항 및 제32조 제4항).

한-인니 CEPA에서는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에 따른 분쟁해결을 도입하여, 분쟁해결절차 청구 제기의 대상 및 불가능한 대상, 협의 및 교섭 등 세부절차의 기간, 중재기관, 중재 적용규칙,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복소송제한, 중재판정의 단심제로서의 확정력 등 구체적인 ISD 절차들을 규정하였습니다(제7.19조). 한-인니 CEPA에 따른 ISD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²

2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 한-인니 CEPA 상세 설명자료](#), 2020.01, 57쪽.



3. 관세 인하·철폐 등 상품의 시장 접근 향상

한-인니 CEPA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됩니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건들에 대하여는 HS code별로 한-인도네시아 CEPA, 한-ASEAN FTA, RCEP³의 양허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인니 CEPA의 특정용도 면세제도(user specific duty-free scheme)에 따라, 다음의 특정한 용도로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조건(규격, 등급, 국내 생산여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i)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그 부품; (ii) 전기 및 전자제품; (iii) 건설기계 및 중장비; 및 (iv) 석유, 가스 및 전력.

4. 기타

수출입·통관·무역과 관련하여 다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3 RCEP도 8월 30일 한-인니 CEPA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회의 비준을 받았으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효될 것으로 보임.

1.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판정 절차**와 관련하여 한-인니 CEPA 3장에서 원산지 기준과 증명 등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의 산정 공식, 원산지 증명에 기초한 특혜관세대우 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
2. **통관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한-인니 CEPA 4장에 따른 통관 절차 간소화, 상품의 효율적 반출 등 개선.
3. **무역구제**와 관련, 관세 인하 또는 철폐가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무역구제조치 발동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는, 한-인니 CEPA를 통해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일부 서비스 분야⁴에서는 현행 규제 수준이 향후 더 강화되지 않도록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래치조항)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력 이동**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기업내 전근자(이사, 관리자 및 기술전문가)에 대해 체류는 2년까지 허용되며 매회 2년 연장을 조건으로 최대 두 차례 연장될 수 있도록 하여(부록 6-나-2), 기존 체류허가증(KITAS)과 관련한 실무방식이 변경될 수 있어 보입니다.

IV. 한-인니CEPA의 영향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약 18억 달러로 1980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한-인니 CEPA가 발효되게 되면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니 CEPA 발효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약 92.1%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그간 한-아세안 FTA상 양허에서 제외된 우리 고급 철강제품 중 특히 자동차용 강판, 전자제품 소재강판 등 총 104개 품목이 한-인니 CEPA상 특정용도 면세제도를 활용하여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니 CEPA가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그와 관련한 후속 법령 및 guideline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후속 법령의 제·개정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인니 CEPA를 실제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용 원칙 및 선례가 확실해 질 때까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 및 확인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 *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인도네시아 법률 업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Desk를 통해 현지에서 밀착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인도네시아측: 법률, 국제해상여객,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13개 분야
우리측: 엔지니어링, 광고, 패키징, 관광가이드 서비스 등 35개 분야